- 나. 가축 인공수정소 폐업 신고 시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는데, 분실 시 예외규 정이 없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아 폐업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 실사유 기재란을 추가(별지 제9호의 서식)
- 3. 의견제출
  -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축산경영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의견과 그 사유)

개정안	수정안	수정사유
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, 팩스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법령안 담당자 junku7716@korea.kr
- 2) 우편 : (우 30110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5동,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
- 3) 팩스: 044-868-3966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(전화 044-201-23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 <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·행정예고>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◉환경부공고제2020-582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9조제2항에 따른「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」(환경부고시 제2015-162호, 2015. 9. 1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9일

환경부장관

「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- 1. 개정이유
  - 「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」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 질(고시)」의 명칭 및 내용 변경 등에 따라 관련사항 개정 필요
- 2. 주요내용
- (문구수정) 인용 고시명 명칭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(환경 부고시 제2014-239호) 에서 「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(환경부고시)」으로 고시명 변경
- (제외대상 추가) 인용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제외대상 물질을 추가
- 아미노산, DNA 구성 염기 및 charcoal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제외기준 대상에 추가 (다만, 활성탄[Activated charcoal, Activated carbon] 은 제출대상 포함)

## 3. 의견제출

-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는 '20. 6. 29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안전과, 전화 044-201-6848 / 모사전송 044-201-683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본 「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」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 내 법령/정책 입법·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

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763호

「주차장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(법률 제16951호, 2020.2.4. 공포, 2020.8.5. 시행)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- 2. 주요내용
- 가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(제8조의2 신설)
  -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, 주택가 등의 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개방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
  -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이 필요한 시설물
- 3. 의견제출
  -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도시교통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 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  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 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  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  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
  - 전자우편 : csy0521@korea.kr
  - 팩스: 044-201-5581
-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(전화 044-201-3814, 3811)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